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8	3	1993. 1. 26	종 재 조 순

의안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을 불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72조

제의취지 최근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처하여 은행 여신금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리수준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여 기업의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대외경쟁력 제고와 위축된 투자심리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72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

② (생 략)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I. 여신업무이율		I. 여신업무이율		
구분	이율	구분	이율	
1. 상업어음 재할인	연 7.0%	1. 상업어음 재할인	연 5.0%	- 2.0% 포인트 인하
2. 담보대출		2. 담보대출		
가. 무역어음 담보대출	연 7.0%	가. 무역어음 담보대출	연 6.0%	- 1.0% 포인트 인하
나.~라. (생략)		나.~라. (현행과 같음)		
마. 방위산업어음 담보대출	연 7.0%	마. 방위산업어음 담보대출	연 6.0%	1.0% 포인트 인하
바.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바.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취급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취급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		
(1) 제1호에 의한 대출	연 7.0%	(1) 제1호에 의한 대출	연 6.0%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자금용,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고재, 부품산업 시설자금 등의 금리 1.0% 포인트 인하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3호에 의한 대출	연 8.0%	(3) 제3호에 의한 대출	연 7.0%	유동성자금(B1자금) 금리 1.0% 포인트 인하
(4)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Ⅱ. 기 타 1. 시행일자 : 1989. 11. 15 2. 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일전에 금융기관이 다음의 대출을 취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 2-바-(1)의 이율을 적용한다. 가. 1981년도 수출산업설비자금대출 나. 1981년도 중소기업특별저리설비자금대출 다. '에너지' 발전시설자금대출 라. 정부의 정책사업자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② 1988.9.1 이전에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규정」에서 정한 "가나 한국은행 총채가 특별히 인정하는 대출"(서울시 지하철건설자금 제외)을 취급한 경우 및 "기업체질강화대책과 관련한 토지개발채권"을 보유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Ⅱ. 기 타 1. 시행일자 : 1993. 1. 26 2.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일전에 금융기관이 '에너지' 발전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 2-바-(1)의 이율을 적용한다. (식 제)	- 시행일자 명시 - 금융기관의 1981년도 수출산업설비자금대출, 1981년도 중소기업특별저리설비자금대출, 정부의 정책사업자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취급한 대출을 전액 회수될 때까지 적용 - 관련대출이 전액 회수되거나 잔액이 남아 있는 대출의 경우 적용 금리수준이 금번에 인하되는 이 규정 2-바-(1)의 이율과 동일해짐에 따라 별도의 경과조치 불필요